

제4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용계약내용)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**계약목적** :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- ② **계약기간** : 신규입소 시 장기요양등급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등급 변경, 갱신, 수가 변경 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때 계약 기간을 보호자(수급자)와 다시 설정 하도록 한다.
-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,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.
- ⑤ 계약의 해제 :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,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(보호자)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.
- ⑥ **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**
 1. 신원 인수인의 권리
 -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.
 - 시설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 -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.
 -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 2. 신원 인수인의 의무
 -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,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시설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.
 -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·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.
 -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.
 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

의무가 있다.

-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.

이용비용 및 수납,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 이용료

-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일부 부담금(30일 기준, 본인부담금 20%, 12%, 8%, 기초수급자) 및 비급여(식비 및 간식) 비용은 별첨과 같다.

② 본인부담금

- 일반 이용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·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 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%, 12%
- 비급여 : 식비(1식 2,500원), 간식비(1식 500원)

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
-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[제11조 별첨]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

구분		1일 급여	월 급여액 (30일 기준)	월 본인부담금 (30일 기준)
노인요양시설 (개정법)	1등급	93,070	2,792,100	558,420
	2등급	86,340	2,590,200	518,040
	3등급~ 5등급	81,540	2,446,200	489,240
	국민기초수급자	면제	면제	면제
치매전담실	2등급			
	3등급 4등급			
비급여	식비	7,500 (1식 2,500)	225,000	225,000
	간식비	1,000 (1식 500)	30,000	30,000
	국민기초수급자	면제	면제	면제